

現代家族의 解體現象에 관한 一考察

—離婚을 中心으로—

경 민 자

가정관리학과

(1986. 9. 30 접수)

<요 약>

오늘날 離婚 事件事이 꾸준히 증가됨으로써 家族解體現象은 심지하다. 離婚은 家族의 不安定性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家族解體의 表面的 質體이다. 이혼은 夫婦關係를 파괴시키고 자녀의 心障과 양육에 영향을 주는 家族生活事件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가족의 안정성을 위한 몇 요인을 모색하고자 離婚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離婚의 原因 및 狀態, 離婚에 관한 意識을 고찰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어떤 家族關係 중 夫婦關係가 매우 중요하며 愛情의 要因을 중요시 여기는 價値體系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夫婦의 직업이 불안정할수록 이혼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家族의 安定性을 유지하고 가족해체의 병카세로서 子女의 存在는 매우 중요하다.

A Study on Disorganized Familie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Divorce

Jung, Min-Ja

Dept. of Home Management

(Received september 30, 1986)

<Abstract>

Disorganized families have appeared because of increasing divorces in Korean society today. Divorce is an index that stands for an extreme family instability. Because divorce influences marital relationship and child rearing, it must be analysed especi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search on divorce rate, cause, actual condition and the married's consciousness for inferring family st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arital relationship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family relationships. Also affection is essential in the marital relationship. Second, children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securing family stability. Third, the more marital occupation is instable, the more divorce rate rises.

I. 序 論

19세기 이후 近代化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家族制度도 변위하기 시작하여서 社會體系의 變動과 디

문이 家族의 外的內的 構造 및 關係에까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내에 팽배되고 있는 갈등과 모순은 社會問題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家族問題 또한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現代家族의 核家族化, 출산률의 감소, 전통적 가족기능의 상실,

家族關係가 親族中心에서 大婦中心化, 愛情과 人格的 結合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는 價値觀, 女性的 社會進出, 男女平等主義, 個人主義의 태두³⁾등은 가족을 과거보다 자유롭고 융통성있게 규정짓고 있으나 반면에 家族의 不安定性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때문에 현대가족은 외적, 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상황과 시기를 잘 고려하여 적응하면 발전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나 가족원간에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못하고 역한 수행을 할만한 能力과 資源이 충분하지 못하면 가족내에 갈등과 긴장이 극대화되어 가족의 괴환은 깨어지고 가족의 病理現象을 초래하여 결국은 가족단위가 파괴되는 家族解體現象이 나타난다.⁴⁾ 현대의 가족해체현상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장 표출적이고 격나라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離婚이다.⁵⁾ 離婚은 家族의 核을 이루는 “부부”가 어떤 이유론든 家族의 共同生活을 하지 못하고 婚姻과 家族의 關係를 해소시키는 家族生活事件이다. 離婚이 생기되면 外面的, 內面的으로 완전히 가족을 해체시키기 때문에 가족해체현상인구에서는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주제이다. 그러한 離婚은 전세계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다. 미국은 결혼자의 40~50%가 이혼을 하고, 18세미만 아동의 28~40%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그 아동의 90%가 어머니의 보호아래 있는 실정이다.⁶⁾ 30대 여성은 10명중 6명이 초혼에 실패함으로써 30대 여성의 이혼율은 사상최내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해마다 120만건의 이혼(U.S.A., Today, 1986)은 가족원들이 얼마나 不安定 狀態를 경험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가족정책을 통하여 적절하게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전 반적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며⁷⁾, 특히 전통성이 있고 법적 규제가 강한 소련도 인구 1,000만명당 3.6명이 이혼자로서 분제가 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도 역시 4만9천쌍이 결혼식을 올리고 그 비수가 이혼을 하고 결혼한 부부의 1/3이 양쪽 다나 직이도 안 쪽이 재혼한 경우이다.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離婚事件數가 꾸준히 증가됨으로써⁸⁾ 이혼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이르렀다.⁹⁾

家族解體現象의 한 유형인 離婚은 子女養育과 成長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大婦間에 심리적, 정신적 타격, 애정문제, 사회경제적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離婚의 談原因 및 實態를 진단해 봄으로써 가

능한 한 離婚의 危機를 덜렁하게 극복하여 家族의 安定性을 갖게하는 요인을 모색해 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아직까지 우리에게서 이혼선언은 結婚生活의 不適應이며 도덕적 실패로서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이데올로기이므로, 家族員에게 미치는 영향과 당사자들의 再適應에도 어려운 事件인 것이다. 따라서 離婚者가 된 女姓은 再婚을 하기 않으면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하려던 여녀 門으로 고통이 심하다. 離婚女姓의 40~50%가 빈민층을 만치 못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미치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¹⁰⁾ 이에 본 연구는 現代家族의 解體現象中 離婚을 중심으로 논의해 봄으로써 家族의 安定性에 필요한 몇 요인들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Ⅱ. 本 論

1. 現代家族의 解體現象과 離婚

사회규범이나 가치관의 갈등을 社會解體로 보는 학자가 있듯이, 가족의 관습이나 긴장의 극한 상황을 家族解體로 보기도 한다.¹¹⁾ 그러나 보통 家族解體라 함은 「가족단위의 붕괴」로서 가족이 가족원으로서 役割과 義務를 적절히 수행하기 못하는 상태에 있거나 가족원간의 파괴 및 社會的 役割構造가 원전디 붕괴된 상황을 의미한다.¹²⁾ Goode(1964)는 이러한 家族解體現象을 5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첫째, 非合法的 婚姻으로 인한 미완성 가족이다.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성이 대다수 없는 상대로서 일반 가족처럼 정상적인 가족구조와 역할을 갖지 못한다. 둘째, 혼인무효소송, 이혼, 유기, 별거 등으로 부부 양측 또는 한 편이 異議突起를 함으로써 家族構造가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이다. 셋째, 빈껍질 가족(Empty Shell family)로서 가족원이 함께 살기는 하나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없고 상호작용이 미약함으로써 서로에게 가족적 의존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가족의 가족해체 현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보아야 할 형태이다. 넷째, 본의 아니게 한쪽 배우자가 경손된 상태이다. 전쟁, 질병, 재난 등으로 남편이나 부인이 사망하거나 수감됨으로써 가족구조가 붕괴되고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섯째, 본의 아닌 중요 역할이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즉 가족내에 심리적, 신체적 성숙이 진행자가 있는 애가 이에 속한다. 배우자의 정신질환,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손상 등으로 인해

가족내에서 역할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위의 5범주는 모두 가족내에 갈등과 긴장이 내재되어 있고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각 유형별로 나타나는 家族의 役割과 機能의 문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족원에게 곤란을 주게 된다. 그 중 제2의 유형은 부부간의 갈등 불화가 의도적, 행동적으로 드러나 결혼가족의 분체를 야기시킨다. 특히 離婚은 夫婦關係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法的으로 선언하고 家族解體를 고집화시키는 사건이다. 따라서 家族의 기초 기능인 性的 愛情的 機能이 상실되고, 부부간의 어한 고인성은 물론 경제적, 교육적, 양육적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再婚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家族의 機能과 役割을 회복하기까지는 가족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 婚姻이 男女의 經濟的, 愛情的 共同生活을 목적으로 하는 結合關係로서는 大婦關係, 親子關係, 親族關係를 동하여 家族의 安定性을 추구하나 일단 離婚이 제기되면 기존의 모든 가족원계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不安定性은 고조된다. 그런데 결혼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도저히 화합할 가능성이 없고 당사자들도 이혼을 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家族의 維持를 목적으로 結合단을 강요한다는 것은 非人道的이라는 意識이 대두됨으로써 姦通과 같은 중대사유가 있으면 국가적 응인을 인하여 이혼을 할 수 있게끔 하였다.¹⁰⁾ 따라서 세계적인 이혼제도의 성립은 부부간에 선택의 자유를 넓혀 준 반면에 가족구조를 악화시키고 가족의 불안정성, 가족해체의 가능성을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2. 離婚 事由의 實態分析

(1) 離婚 事由

離婚問題는 가족이 있고 그 안에 夫婦가 존재하는 한 어느 시대에도 야기되었다. 현재의 離婚制度가 있기까지 이혼의 규제 방식이나 범위, 이혼의 사유는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離婚事由를 지닌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에는 婦人의 姦通이나 犯罪가 있으면 法的으로 離婚을 시켰다. 또한 고려시대에도 일반 시민의 경우 유사한 事由로 이혼을 하게 하였다. 즉 「妻가 관부로 남편을 떠나 도망하면 徒刑 2년에 처하고, 도망하여 改嫁한 경우는 2年流刑에 처한다. 女子가 도망해 온 범인 줄 알면서 팻한 경우는 여자

와 同罪로 다스리며 有大人인 줄 몰랐으면 더가 없다. 남자인 경우 부모와 의논하기 않고 이유없이 뜻을 버린 자는 停職에 처하고 代處하게 한다.」(고려사, 卷84志38刑法-戶婚條)고 하였다.¹⁰⁾ 그러나 父權의 확립과 함께 婦女의 지위는 예속화되었고 家族制度가 多妻制로서 蓄妾이 당연하였기 때문에 男性의 專權에 의한 無因離婚이 내다수였다. 특히妾들이 있음으로써 妻의는 원강하게 離婚을 단행할 필요가 없고 별거 내지 유기형태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까지는 自由婚이 성행한 것이고 妻호간에 별다른 차별이 없었다는 기록을 보면 앞에 나타난 淫行의 妻인 경우에 강제이혼을 당했고 父母의 合議에 의한 離婚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¹¹⁾ 朝鮮時代에는 고려말 이후 유교가 보급됨에 따라 離婚制度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었다. 조선시대의 離婚의 지배원리는 소위 七去·三不去의 原理이다. 七去(七出)란 妻를 버려도 되는 7가지 사유로서 無子, 淫妖, 妬, 不事舅姑, 多言, 惡疾, 竊盜를 의미한다. 그런데 七去의 事由중 淫妖(不貞), 不事舅姑, 惡疾이 離婚의 주요 事由인 것으로 보고된다. 七出의 사유가 있더라도 三不去(與共便三年裏, 先貧賤後富貴, 有所養無所歸)에 해당하면 離婚이 허용되지 않았다. 義絶이라는 강제이혼 協議離婚의 경우도 있었으나 조선시대에는 대체로 離婚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유없이 糟糠의 妻를 버린 때는 엄벌에 처함으로써 有因原因이 되어야 이혼이 인정되는 셈이었다.¹²⁾ 특히 당시의 가족원리는 婦人은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었으므로 婦人의 離婚請求權은 법률상 간수상 인정할 수 없었다. 조선의 최후 刑法大典에 비로소 구체적인 離婚事由가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夫의 祖父母·父母에게 不順한 者 ② 多言하여 族戚에게 不和하게 한 者 ③ 淫行이 有한 者 ④ 竊盜한 者 ⑤ 傳染하는 惡病이 있는 者인 경우이다. 三不去의 경우는 子女가 有한 者가 포함됨으로써 四不去인 셈이다. 七出中에 無子, 妬의 原因이 식세되었다. (제578조 참조) 또한 妻호의 所犯이 ① 夫를 謀害 毆打한 者 ② 夫의 期親 以上 尊長이나 外祖父母를 毆罵한 者 ③ 祖免 以上 親을 姦姦한 者(제579조)는 남편이 상제로 이혼을 해야 했다. 남편의 所犯이 ① 妻호의 祖父母를 毆하거나 伯叔父母나 姑나 外祖父母를 毆傷한 者 ② 妻호의 母를 姦淫한 者(제580조)는 國法에 의해 강제이혼이 성립

되었다.

1915년 法의으로 一夫一妻制가 규정되기까지 한국 가족제도의 특성은 다분히 多妻 및 妾婦이 용인된 것으로서 離婚制度 역시 이에 순하였다. 一夫一妻制가 법제화되었어도 해방 이전까지는 여전히 男女不平等하게 離婚事由가 적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간통은 처벌에서 제외되고(有人女의 相姦은 처벌) 부인의 간통은 처벌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一人多妻制를 묵인하는 상태로서 난순한 贅妾단으로는 離婚이 되지 않았다.¹⁰⁾ 그것은 역사적으로 전수된 가족제도가 男性의 專權的 家父長制度의 特性을 갖고 있는 親族·家族主義가 강하고, 그에 따라 父子關係 家系繼承을 중요시한 家族構造 등 복합적 요인이 내재된 결과이다. 그러나 1977년 일부 민법개정 등 능한 婚姻 및 離婚에 관련된 규정은 男女平等主義에 입각하고 人婦平等의 原則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現代 家族의 離婚事由는 質의으로 다르게 되었다. 현대에 적용되고 있는 離婚事由는 相對的 離婚原因主義를 채택하고 있고 男女平等한 입장에서 離婚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또한 協議離婚을 통하여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소경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관을 통하여 離婚을 결정한다. 오늘날 적용되고 있는 離婚事由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配偶者의 不貞한 行爲로서(840조 1호) 부부중 어느 쪽이나 혼인의 순결성을 위반하였을 때는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② 惡總의 遺棄(840조 2호)로서 강녕한 사유없이 同居 扶養의 의무를 세우려 하는 경우이다. 이 때 악의만 단순한 사실 뿐 아니라 유리식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遺棄는 엄격히 별거, 위조의 懈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혼인 생활의 파기를 의미한다.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840조 3호)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840조 4호) ⑤ 3년 이상 生死不明(840조 5호)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등대한 사유가 있을 때(840조 6호)이다. ①-⑤호는 절대적 이혼 사유가 되며 ⑥호는 夫婦關係가 破綻되어 回復될 가능성이 없는 다양한 이유를 포괄함으로써¹¹⁾ 추상적 상대적 이혼 사유를 제시하였다. 제⑥호에 해당하는 判例를 살펴보면¹²⁾ 육체적 괴리 위인으로시 배우자의 범죄, 부당한 괴임, 성병의 감염, 이유없는 성교거부, 성격 불합, 폭행 등이 포함된다. 윤리적 경건적 기타 위인으로서는 불

치의 경신병, 애성성실, 성격불일치, 수년자에 계속된 별거, 정신적 모욕 및 가해, 신앙의 차이, 광신자, 일그러움 등, 마약 중독 등이 있다. 경제적 파탄 원인으로서는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는 부인의 낭비, 불성실, 지나친 더임 사치 능이 있다. 현대의 離婚制度가 부부의 평등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함으로써 부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든 쉽게 헤어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만큼 家族解體는 더욱 가속화 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離婚事由는 그 시대의 가족제도와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규제 방식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은 夫婦의 不貞과 親族關係를 위협한 경우이다. 대체로 一夫多妻의 性格과 家父長權이 강했던 것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不貞에 대한 제재가 강했고 남편의 不貞은 家族·親族體系를 위협하지 않는 한 묵인되었다. 그러나 離婚事由의 규정범위가 無因主義에서 有因主義로, 有責主義에서 彼統主義로, 大婦不平等에서 夫婦平等主義로 변모됨으로써 個人의 自由와 權利를 회복시키기에 용이해졌다. 그러나 家庭破綻을 법을 통하여 넓은 범위에서 인정해 줌으로써 피해를 받는 배우자의 生活對策問題와 子女의 保護·教育問題는 매우 심각한 문제¹³⁾로 인식되고 있다.

(2) 離婚 質態分析

① 이혼비율

한국의 이혼율은 주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¹⁴⁾ 1912년에 인구 10만명 중에서 62명 강도가 이혼을 했다. 그 이유로는 한일합방과 함께 한국의 전통적 윤리의식인 糟糠之妻에 대한 離婚禁止論이 약화된 탓으로 보고 있다. 1937년까지 이혼율은 감소하였고 1939~1945년까지는 이혼 관계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다. 1946~1948년까지 이혼율은 감소하였는데 해방과 더불어 女性을 家의 계승수단화했던 전통적 혼인권이 퇴색되어 강제이혼을 남하는 일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25를 거쳐 낮아진 이혼율은 점차 증가하여 1961년에는 10만명당 45명으로 되었다. 1967년을 기점으로 1974년에는 10만명당 86명이 이혼을 했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지위의 향상과 이혼 수축이 진행해 진 탓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시표에서 추식한 이혼진태를 보면^{15,16)} 성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표 1> 성별, 연령에 따른 이혼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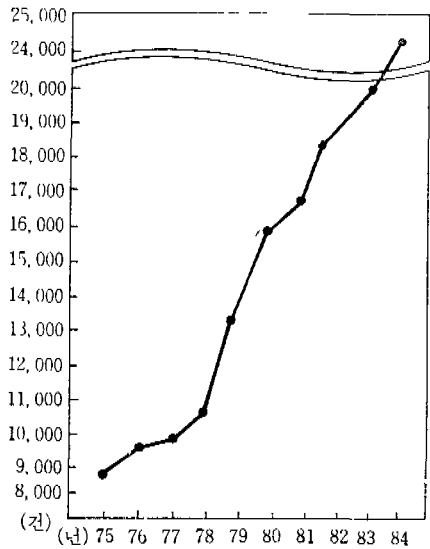
연령	성별		남					여				계				
	1990	1966	1970	1975	1980	1960	1966	1970	1975	1980	1960	1966	1970	1975	1980	
15-19세	0	0	0	0	0	0.1	0	0	0	0	0.1	0	0	0	0	
20-24세	0.3	0.1	0.1	0	0	0.8	0.4	0.3	0.1	0	0.5	0.3	0.2	0.1	0	
25-29세	0.8	0.5	0.4	0.3	0	1.7	1.3	1.1	0.7	0.1	1.2	1.0	0.7	0.5	0.1	
30-34세	1.0	0.8	0.7	0.7	0.2	1.7	1.6	1.6	1.4	0.2	1.4	1.2	1.2	1.0	0.2	
35-39세	1.0	0.8	0.8	0.7	0.2	1.4	1.7	1.8	1.5	0.2	1.2	1.3	1.3	1.1	0.2	
40-44세	0.9	0.8	0.8	0.7	0.2	1.1	1.2	1.7	1.4	0.2	1.0	1.0	1.3	1.0	0.2	
45-49세	0.8	0.7	0.8	0.6	0.1	0.8	0.8	1.2	1.1	0.1	0.8	0.7	1.0	0.9	0.1	
전체(계)	0.6	0.4	0.4	0.3	0.1	1.0	0.9	1.0	0.7	0.1	0.8	0.7	0.7	0.5	0.1	

※ 한국사회과학연구소(1983) 및 인구센서스(1980)에 의한.

<표 1>에 의하면 1960년대에는 0.8%로써 인구 1,000명당 8명이 이혼상태였으며 1966~1970까지 0.7%나 되었다. 1975년에는 0.5%, 1980년대에는 0.1%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離婚事件과는 별도로 그 당시 즈기때에 離婚狀態로 있던 수칙이다. 離婚事件은 '증언'이 증가하고 있는데 離婚狀態인 증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離婚者로 남아 있지 않고 再婚 등을 통하여 다시 結婚狀態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 보면 1975년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離婚者로 남아 있는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30대에 가장 비율이 높고 40대 초반까지 이혼상태율이 높다. 여성의 경우 25세이후 0.7%~1.7%인데 비해 남성은 0.3%~0.8%이다. 30대에는 0.2%~1.7%로 높으며 40대 초반까지 이혼상태율이 높다. 그리하여 1980년 즈기에 의하면 離婚狀態로 있는 경우가 낮아져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혼상태를 再婚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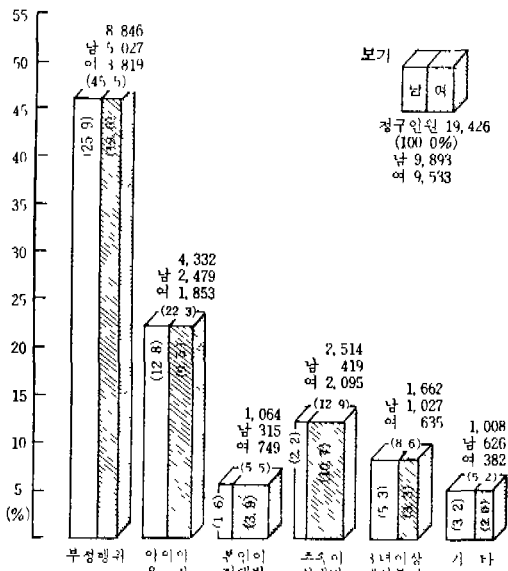
② 裁判上의 離婚實態

1980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離婚者는 1,212,22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혼 사건수는 계속 증가하여 1984년 18710건으로 보고되었다(도표 1 참조). 특히 1978년부터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는데, 1977년 민법개정이 있었다 것을 염두에 둔다면 사회상황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 이혼 사유를 보면 1984년까지 가장 높은 離婚 事由는 夫婦의 不貞行爲이다. 1984년(사법연감, 1985)에 보고된 이혼소건의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재판상이혼사건의 추이-절수

남녀 모두 「不貞行爲」가 45.5%로써 이혼을 하였다. 「악의의 유기」는 22.3%로써 이 두 경우는 다른 경우보다 夫婦間의 愛情의 不誠實이 본제가 되어 가정이 해체된다. 「존속이 학대받는 경우」가 12.9%나 되는데 이것은 한국가족의 구조적 특성인 家系繼承의 중요성 親族의 존중, 부모에 대한 孝思想이 면면히 계승된 우리의 意識과 慣習에 대한 逆機能의 반영이다. 이혼 사건을 제기한 가족의 특성을 살펴 보면 <표 2>의 같다.¹⁷⁾ 결혼지속연수면에서 3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가 43~54%이며 1984년에는 43.6%였다. 5년 이내에까지 누계빈도를 본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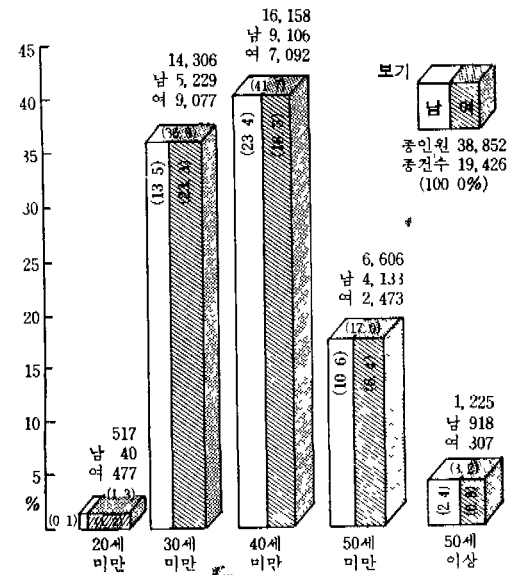


〈도표 2〉 이혼사건 원인별 비율

주: 1. 이혼사건 중 원인이 경합된 경우는 주된 1개만 세상함.
 2. 원인별 인원수간에는 조사전 취하 등으로 계수의 차이가 있음.
 ※: 시법연감, 1985.

70% 내외이다. 1984년에는 69.8%가 결혼후 5년이내에 재산상 이혼을 하였다. 이것은 夫婦間의適應이 3~5년 사이에 가장 어려운 시기임을 증명한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도표 3 참조) 30~39세가 41.7%, 20~29세가 36.8%를 차지한다. 이것은 <표 1>의 離婚者 연령분포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는 결혼을 하여 家族生活上 다양한變化가 있는 때이다. 결혼, 자녀의 출생·양육, 경제직 직음, 직업생활상의 추구, 주거의 정착 및 미련 등으로 家族의 發達課業이 매우 어렵고 부담이 큰 시기이다. 부인은 子女의 出産·養育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그에 따른 家族關係의 재정리, 가사노동의 과중 등으로 피곤하다. 반면에 남편은 직업생활로 바쁜 시기이다. Duvall(1979)에 의하면¹⁸⁾ 幼兒期 家族인 경우 특히 부부간의 對話를 강조하였다.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幼兒期 家族 및 學童期 家族에 있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夫婦關係의 質을 높이는 의도적 노력이 특별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子女의 數가 2~3명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50

~60%가 집중되는 것을 보면(표 3 참조) 夫婦關係가 최악의 상태가 되면 子女問題는 2차적인 것으로 된다. 직업에 따른 이혼율을 보면(표 4)와 같다.¹⁹⁾ 청구인의 경우, 남성의 직업은 상업, 노무자, 농어업, 기타, 무직, 자유업, 종업원, 공무원, 군인, 교육자의 순위이다. 여성의 경우는 무직(42.3%), 상업, 농어업, 기타, 노무자, 종업원, 자유업, 회사원, 공무원, 군인의 순위이다. 피청구인의 경우에 남성의 직업은 무직(15.5%), 노무자, 실업, 회사원, 기타, 농어업, 자유업, 종업원, 공무원, 군인, 교육자의 순위이다. 여성의 경우는 무직(48.1%), 농어업, 상업, 종업원, 자유업, 노무자, 기타, 회사원, 공무원, 교육자, 군인의 순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나타난 결과들은 그렇지 않다. 직업에 따른 미국의 이혼율을 간략히 보면 저서비스계층 중저사, 노무자, 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혼율이 높으며 전문직 경영인들일수록 낮은 이혼율을 보였다.¹⁹⁾ (표 4)에서 보듯 무직, 노무자, 상업, 종업원,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육자, 공무원, 회사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이혼율이 높고 이혼을 당하는 비율이 높다. 여성의 경우는 청구인이든 피청구인이든 「무직」이 42.3%, 48.1%이다. 이것은 이혼후에도 경제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남성이 피청구인이 되



〈도표 3〉 이혼사건 연령별 분포

시법연감(1985)

〈표 2〉 이혼사건 동거기간별 비교

(%)

기간	합 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초과
1970	3,316 (100.0)	470 (14.0) (14.0)	586 (17.7) (31.7)	738 (22.3) (54.0)	582 (17.6) (71.6)	449 (13.6) (85.2)	491 (14.8) (100.0)
1975	5,943 (100.0)	469 (7.9) (7.9)	933 (15.7) (23.6)	1,260 (21.2) (44.8)	1,651 (27.8) (72.6)	1,134 (19.1) (91.7)	496 (8.3) (100.0)
1980	11,086 (100.0)	864 (7.8) (7.0)	1,422 (12.8) (20.6)	2,513 (22.7) (43.3)	3,213 (29.5) (27.8)	2,112 (19.1) (91.9)	902 (8.1) (100.0)
1983	15,236 (100.0)	1,100 (7.2) (7.2)	2,184 (14.3) (21.5)	3,484 (22.9) (44.4)	3,922 (25.8) (70.2)	2,870 (18.8) (89.0)	676 (11.0) (100.0)
1984	19,426 (100.0)	1,669 (8.6) (8.6)	2,725 (14.0) (22.6)	4,073 (21.0) (43.6)	5,091 (26.2) (69.8)	3,627 (18.7) (88.5)	2,241 (11.5) (100.0)

수 : () 내 수는 구성비(%)임. 이하 같음.

〈표 3〉 이혼사건 자녀수별 비교

(%)

자녀수	합 계	무 자	1 인	2 인	3 인	5인 이상
1970	3,316 (100.0)	844 (25.5)	912 (27.5)	801 (24.1)	597 (18.0)	162 (4.9)
1975	5,943 (100.0)	823 (13.9)	1,368 (23.0)	1,492 (25.1)	1,444 (24.3)	816 (13.7)
1980	11,086 (100.0)	1,136 (10.3)	2,682 (23.2)	3,636 (32.8)	2,834 (25.5)	798 (7.2)
1983	14,669 (100.0)	2,178 (14.8)	4,278 (29.2)	4,925 (33.6)	2,884 (19.7)	404 (2.7)
1984	18,710 (100.0)	3,019 (16.1)	5,408 (28.9)	6,201 (33.2)	3,485 (18.6)	597 (3.2)

〈표 4〉 이혼사건 직업별 비교

(%)

구분	직업	합 계	농어업	노동자	종업원	상업	군인	회사원	교육자	공무원	자유업	부귀	기타
청 구 인	남	9,446 (100.0)	1,329 (14.1)	1,360 (14.4)	549 (5.8)	1,466 (15.5)	157 (1.7)	1,318 (14.0)	155 (1.6)	243 (2.6)	672 (7.1)	1,061 (11.2)	1,136 (12.0)
	여	9,264 (100.0)	947 (10.2)	704 (7.6)	605 (6.5)	1,220 (13.2)	1 (0.0)	369 (4.0)	45 (0.5)	90 (1.0)	569 (6.1)	3,930 (42.3)	794 (8.6)
피 청 구 인	남	9,264 (100.0)	1,100 (11.9)	1,334 (14.4)	578 (6.2)	1,249 (13.5)	109 (1.2)	1,178 (12.7)	108 (1.2)	174 (1.9)	854 (9.2)	1,435 (15.5)	1,145 (12.3)
	여	9,446 (100.0)	966 (10.2)	576 (6.1)	709 (7.5)	958 (10.1)	1 (0.0)	394 (4.2)	30 (0.3)	54 (0.6)	681 (7.2)	4,540 (48.1)	537 (5.7)

는 경우 「무직」이 제 1순위이다. 이는 남성이 家庭으로서, 家族의 役割遂行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신직」이나 「무직」은 가족의 상대한 스트레치이다.²⁰⁾ 저소득 가계일수록 경제력 문제가 누적되어 가족의 기능을 나비시키고¹⁹⁾ 가족내에 스트레스가 쌓여 급기야는 夫婦關係 뿐만 아니라 父子子女關係도 파괴시킨다.²¹⁾ 그러므로 직입의 인건 및 사회경제적인 풍요요소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직입이 안정적일 경우가 직입이 불안정한 경우보다 이혼하는 비율이 낮다.

3. 離婚에 관한 意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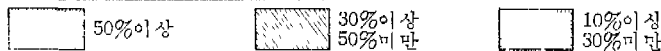
(1) 離婚이 가능한 事由들

일에서 언급한 離婚 事由 및 意識는 構造的 特性을 띠었다. 그에 비하여 一般인이 세세히 보는 離婚이 가능한 事由와 이혼 여적 이유는 離婚에 관한 價値觀을 반영한다. 「부부가 이혼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輿論조사연구²²⁾와 이를 기초로 울산지역조사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輿論조사(1979)는 한국, 영국, 미국, 프랑스, 서독, 일본 6개국을 대상으로 국제 비교를 하였다. <도표 4>에서 보듯이 한국과 일본은 심각불일치, 부부중 애인이 생겼을 때, 폭력을 쓴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미국은 폭력, 애정상실, 애인이 생겼을 때가 가장 두드러진 이유이다. 유럽 각국은 폭력, 애인이 생겼을 때, 애정상실 순위로 나타났다. 유럽 및 미국은 심각불일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아기를 갖지 못할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는 비율이 한국이 가장 높다. 이것은 한국가족의 특성인 男系中心的 家系繼承 및 유교식 가주 윤리가 진존한 의식의 반영이다. 즉 조선시대의 離婚의 중대 事由인 「無子」의 意識이다. 또한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한국이 25.5%로 단연 1순위인 것은 전통적인 한국가족의 의식과 보수성의 비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산시에 거주하고 있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성격이 서로 맞지 않을 때	34.7	48.9	27.5	32.4	37.8	37.1
부부 중 하나가 애인이 생겼을 때	34.3	47.0	56.5	77.8	66.0	60.7
폭력을 쓴 경우	22.3	44.5	58.8	75.3	61.6	68.4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6.5	39.3	27.8	26.3	31.3	14.4
한쪽이 애감이 없어졌을 때	17.1	28.5	56.8	48.8	39.0	44.1
성생활이 인간하지 않을 때	6.4	20.6	24.2	15.7	35.3	37.8
기과의 칠격능과 사이가 아주 좋지 않을 때	1.4	6.6	7.0	2.5	4.7	1.6
경제적으로 집안이 망했을 경우	2.7	3.6	10.2	1.4	12.6	1.7
부부 중 하나가 오랫동안 아플 경우	1.2	2.8	4.6	1.6	2.6	1.5
이기를 가질 수 없을 때	13.7	2.0	5.2	3.1	6.6	11.8
기 타	1.7	1.0	3.2	0.8	1.8	1.9
어떤 경우든지 이혼해서는 안 된다	25.5	17.0	11.1	3.8	9.1	5.4



<도표 4> 이혼의 원인

〈표 5〉 이혼할 수 있는 이유

(%)

항 목	복	요 인		
		제 1	제 2	제 3
성격이 서로 맞지 않을 때		108 (40.0)	35 (13.0)	43 (15.9)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때		7 (2.6)	12 (4.4)	15 (5.6)
부부중 하나가 애인이 생겼을 때		40 (14.8)	63 (23.3)	46 (17.0)
폭력을 쓸 경우		21 (7.8)	46 (17.0)	45 (16.7)
한쪽이 애정이 없어졌을 때		35 (13.0)	62 (23.0)	53 (19.6)
성 생활이 위전하지 못할 때		14 (5.2)	1 (7.8)	22 (8.1)
어떤 경우에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44 (16.3)	4 (1.5)	12 (4.4)
무 응 답 자		1 (0.4)	27 (10.0)	34 (12.6)
계		270(100.0%)	270(100.0%)	270(100.0%)

$\chi^2: 23.16^{***}$

*** $p < .001$

〈표 6〉 성별에 따른 이혼 이유

항 목	성 별		제 1 요 인		제 2 요 인		제 3 요 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성격이 서로 맞지 않을 때	45(39.8%)	63(40.4%)	15(15.0%)	20(14.0%)	19(19.8%)	24(17.1%)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때	5 (4.4%)	2 (1.3%)	4 (4.0%)	8 (5.6%)	10(10.4%)	5 (3.6%)		
부부중 하나가 애인이 생겼을 때	24(21.2%)	16(10.3%)	28(28.0%)	35(24.5%)	19(19.8%)	27(19.3%)		
폭력을 쓸 경우	0 (0.0%)	21(13.5%)	14(14.0%)	32(22.4%)	8 (8.3%)	37(26.4%)		
한쪽이 애정이 없어졌을 때	15(13.3%)	20(12.8%)	29(29.0%)	33(23.1%)	24(23.0%)	29(20.7%)		
성 생활이 위전하지 못할 때	7 (6.2%)	7 (4.5%)	8 (8.0%)	13 (9.1%)	12(12.5%)	10 (7.1%)		
어떤 경우에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17(15.0%)	27(17.3%)	2 (2.0%)	2 (1.4%)	4 (4.2%)	8 (5.7%)		
계	113(42.0%)	156(58.0%)	100(41.2%)	143(58.8%)	96(40.7%)	140(59.3%)		
χ^2 값	$\chi^2=23.60^{***}$		N. S		$\chi^2 16.69^{**}$			

***: $p < .001$ **: $p < 0.1$

는 기준치를 대상으로 離婚意識을 조사한 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¹⁾

성격 불일치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어떤 경우에도 이혼해서는 안된다가 16.3%가 된다. 그런데 세고문 기리는 의미에서 제 2요인을 꼽았을 때 부부중 애인이 생겼을 때와 애정상실의 경우에 離婚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특별로 보았을 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성격불일치가 보편적 이유로 제시되나 남성은 부부중 애인이 생겼을 때의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반면에 여성은 폭력을 쓸 경우의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해

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제 3요인으로 응답한 경우 여성은 폭력을 쓸 경우, 남성은 애정상실을 들고 있다. 대체로 성격의 불일치가 보편적 이유이지만 결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도 강하여 보수적인 경향과 가족유지 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은 <愛情의 不貞性>이 이혼의 사유로 인 급하는 반면에 여성은 <愛情의 不貞性>에다 <부부중 誰 情>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한 상당히 지지했다. 가족내의 이혼에 대한 폭력은 고수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과 부합되는 한 측면이기도 하다.

(2) 이혼의 여제 이유

(1) Gallup 조사 내용을 기준으로 1985년 11월 월간지에 게재하고 있는 기준가람 대상으로 설문조사임. 하위표는 부산대학교 전가계산수 SPSS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임. χ^2 값은 유의하다. χ^2 값의 의미는 (1) 3%는 잘못 파악.

〈도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특성		빈도(%)
성별	남	113 (41.9)
	여	157 (58.1)
연령	20대	90 (33.3)
	30대	102 (37.8)
	40대	56 (20.7)
	50대	22 (8.1)
교육수준	국	15 (5.6)
	중	62 (23.0)
	고	65 (24.1)
	대	121 (44.8)
	대학원	11 (6.5)
수입	무응답	3 (1.0)
	상	48 (7.9)
	중	195 (72.8)
	하	25 (9.3)
합	부응답	2 (0.7)
	계	270(100.0)

離婚이 가정의 안정과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일반적 사회통념²²⁾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계속 증가하여 가짜이해세되고 있다. 家庭은 자녀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자녀의 보호 및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人性을 갖도록 社會化시키고 性役割을 학습시키는 場이다. 그러한 가정의 기능이 파괴되지 않고 원활하게 유지시키려면 될 수 있는대로 이혼을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필립이 조사한 이혼 억제 이유에 대한 6개국 연구 결과물 보면 (도표 6)와 같다. 이혼한 충분한 사유가 있

더라도 할 수 없이 이혼을 억제하는 이유를 보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일본 91.1%, 한국 89.4%, 프랑스 86.8%, 영국 74.2%, 서독 68.4%, 미국 68%이다. 그 이외에 「이혼후의 생활 곤란」이 서독 18.9% 「사회비난 때문에」 서독이 4.3% 「종교상 세울때문에」 미국이 14.7%로 응답하고 있다. 출신지역 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다. (표 7, 8 참조)

남녀 모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91.1%, 「이혼후의 생활 곤란」이 5.9%로 나타났다. 그런데 배우자가 부정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한 것인가를 질문하였을 때(표 8 참조) 남녀간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38.9%가 「이혼을 해 버린다」 31.9%가 「자녀를 위해 참는다」고 한 반면에 여성은 「자녀를 위해 참는다」가 41.4%, 「이해해 준다」가 19.7%, 「모른척 한다」가 15.3%로서 配偶者의 不貞行爲에 대해 관용적인 자세를 보였다. 남성은 여성의 부정행위에 대해 민감하게 민감한 반면에 여성은 자녀를 위해 참거나 이해하거나 모른척 함으로써 離婚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離婚이 子女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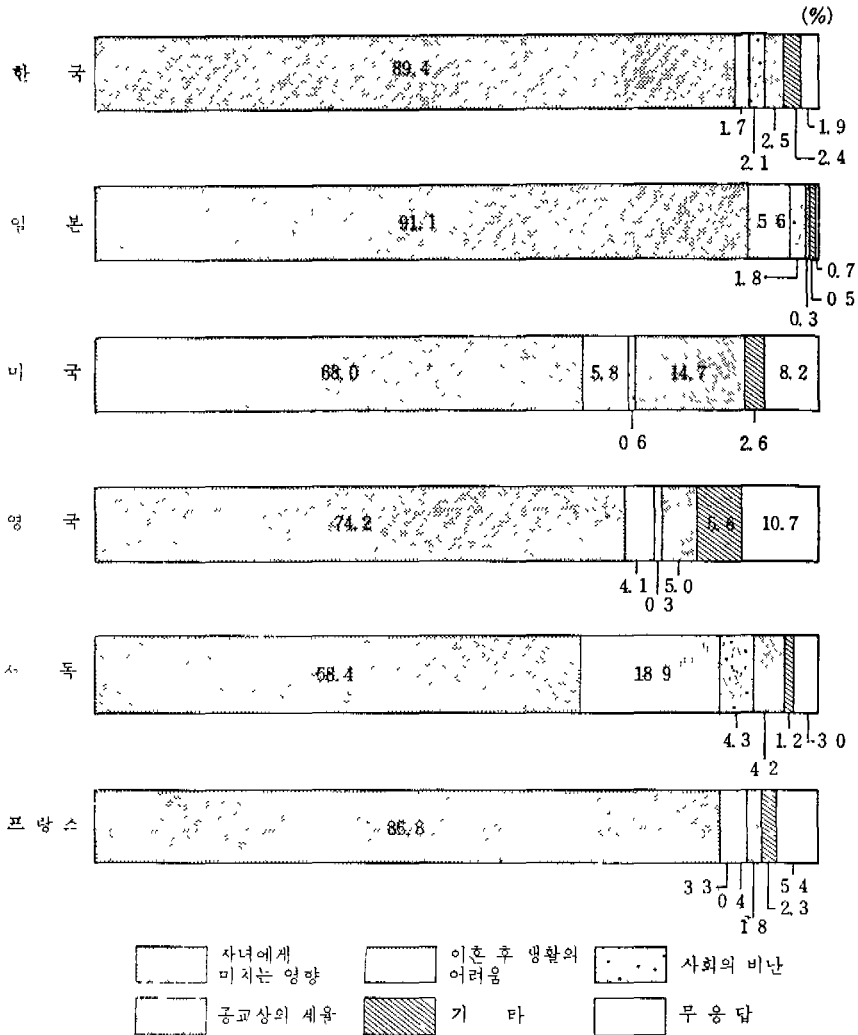
〈표 7〉 이혼의 억제 이유

억제 이유 항목	빈도(명)	백분율(%)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219	81.1
이혼 후 생활의 어려움	16	5.9
사회의 비난	11	4.1
종교상의 계율 때문에	12	4.4
기 타	10	3.7
무응답자	2	0.7
계	270	100.0

〈표 8〉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응도

(%)

항목	성별		계	x ²
	남	여		
이혼해 버린다	44(38.9)	10 (6.4)	54 (20.0)	49.52***
세우다 그만둔다	15(13.3)	22(14.0)	37 (13.7)	
자녀를 위해 참는다	36(31.9)	65(41.4)	101 (37.4)	
이해해 준다	13(11.5)	31(19.7)	44 (16.3)	
모른척 한다	4 (3.5)	24(15.3)	28 (10.4)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	1 (0.9)	5 (3.2)	6 (2.2)	
계	113(41.9)	157(58.1)	270(100.0)	p<.001



〈도표 6〉 이혼의 억제이유

다.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은 미래의 삶에 대해 회의적이고 불쾌감을 느끼며, 정신병적 특징, 대만한 행동을 나타냈다.¹⁹⁾ 비행, 정서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 무관아의 경우 주로 빈곤층 가족이나 이혼가정, 결손가정, 중류층일지라도 비결실가족과 같은 家族解體現象이 있는 가족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혼자들이 이혼 억제이유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가년의 거절한 성장의 장수로서 가정에 유지되어야 하며 家族構造의 安定性을 유지할 필요를 인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結 論

家族解體現象의 표면적 지표인 離婚은 社會問題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家族員에게 영향을 미치는 事件이므로 중요한 주제이다. 현대 가족이 취약해졌고²³⁾ 불안정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점에서, 家族의 安定性을 갖기 위한 조건 및 요인의 탐색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家族解體現象의 한 지표인 離婚을 중경적으로 分析해 봄으로써 家族의 安定性을 위한 몇 요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離婚事由를 살펴 본 결과 어느 시기이나 「配偶者의 不

貞行爲」가 주된 원인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가 67.8%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배우자의 불성실을 나타낸다. 또한 離婚에 관한 意識에서는 「성격의 불일치」가 보편적 이유라던 「부부간의 애성상실」 「부부중 애인이 생긴 경우」는 부부간의 애정적 측면의 분례성을 지적해 준다. 이성은 「폭력을 쓸 경우」에도 이혼을 한 수 있다」고 표명했다. 즉 夫婦關係는 생활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다양하게 부딪히다 보면 갈등이 심화되기 쉽다. 離婚이 세기되는 경우 대다수가 「配偶者의 不誠實」과 「愛情上의 不貞」 또는 「성격의 불일치」 등을 볼 때 서로가 심리적으로 경시각으로 애정과 신뢰를 갖고 원만히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다. 전통적인 한국 가족은 親族關係가 강하고, 家父長權의 家族體系를 가지며, 농근경제적 조건하에 家族主義가 강했던 관계로 家族·親族의 外的 體系에 의해 家族의 安定性이 보장된 편이었다. 그러나 현대 가족은 친족체계가 약화되고 核家族化가 되고 지역 이동성이 증가됨으로써 家族의 中心은 夫婦만이 이니 때보다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家族의 安定性을 보장하는 중요한 關係는 夫婦關係가 되고 있음을 재고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家族의 社會經濟的 狀況을 무시할 수 없다. 재판상 이혼사유 식임을 분류해 보았을 때 무직, 노무직, 실업, 종업원 등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하나, 특히 이성은 정주인이든 피정주인이든 40~50%가 무기상태에서 이혼을 함으로써 離婚後에도 經濟生活, 子女問題 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남성은 피정주인의 세 1수위가 부식이다. 그러므로 家族生活에서 경제적 안정, 직업의 안정은 家族의 安定性을 갖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ஏ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었다. 오늘날 인구정책상 한 자녀되기 운동은 하고 있으나 家族解體를 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녀의 존재」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이성의 설화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現代 家族의 安定性을 도모하기 위해서 家族關係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전통적인 한국 가족이 夫婦關係를 자녀출신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애정의 자유로운 교류를 억압해 왔으나, 현대는 풍요적 사민과 성적 자유가 긍정

적으로 수용되는 愛情構造의 形成 및 價值體系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夫婦間에 愛情의 誠實性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社會經濟的 要因으로서 직업 또한 중요하다.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자들의 경우 무직, 노무직, 상업, 농어업, 종업원 등의 직업은 가진 이들이 공무원, 군인, 교수가 등의 직업을 가진 이들보다 더 많다. 따라서 家族의 安定性을 갖기 위해서는 직업의 안정성 또한 중요하다.

셋째, 家族의 安定性을 가져다 주는 요인으로써 子女의 存在가 의미가 있다. 離婚을 한 만큼 갈등이 높아졌을 때 子女의 存在는 뇌도록이던 가정을 파탄시키지 않게 시용하는 변인이다. 離婚으로 인한 家族解體는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녀에게 否定的 影響을 미치는 편이고 이혼을 억제하려는 성령이 강하다. 따라서 子女의 存在는 가족을 유지하고 가주해체를 방지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현남세, 「한국노기가족연구」, 서울:일지사, 1985, pp.210-213.
2. 유영주, 「가족관계학」, 서울:교문사, 1981, pp.319-321.
3. 정민자,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인간」 「가족가설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권 1호, 1984, p.80.
4. Charles E. Welch III, "A Decade of No-fault Divorce Revisited",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5, No.2, 1983, p.411.
5. 윤희용 외, 「가족·성애과 법」, 서울:한울남, 1986, pp.44~47.
6. 변인행성치, 「가정인간학」, 서울:법학사, 1977-1980.
7. 조현일보, 1984년 9월 14일지.
8. W. Good, *The Family*, New York: Prentice-Hall Foundation of Modern Sociology Series, 1964.
9. 김용환, 「전통가정학」, 서울:박영사, 1984, pp.143-146.
10. 김두현, 「한국가정제도연구」,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pp.483-526.

11. 이광기,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 서울: 일지사, 1983, pp. 246—247.
12. 김주수, 「친족상속법」, 서울: 법문사, 1984, pp. 162—171.
13. 김주수, 「판례가족법」, 서울: 삼영사, 1983, pp. 176—288, 1083.
14. 김대신, “현대가족에 관한 연구 --이혼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1호, 1982, pp. 97—109.
15. 한국사회지보, 서울: 경세기이원, 1983, pp. 159—183.
16. 인구 및 주택센서스, “인량별 및 혼인상태별 인구”, 서울: 경제기획원, 1980, pp. 70—71.
17. 법원행정처, “가사심판관계”, 「시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1985, p. 260.
18. E. Duvall,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J. B Lippincott Company, 1979, p. 266.
19. F. Ivan Nye, *The Famil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73, pp. 454—476.
20. McCubbin H., L. Wilson and Patterson,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 St. Paul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1.
21. 강명순, 「빈민여성·빈민아동」, 전주: 아침새벽, 1985, pp. 11—95.
22. 한국개발조사연구소,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서울: 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83, pp. 117—122.
23. 이정덕, “한국의 전통적 윤리에 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3권 2호, 1985, pp. 172—186.